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임실군</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씨에이에스</td><td>평가
기간</td><td>2026.06.01
~
2026.06.30</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7">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6. 1. ~
2026. 12</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신규 구축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2,650,562천원
(VAT 별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 내·외부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DB, SW 등 변경사항 반영
-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및 정보연계 확대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개정에 따른 DB, SW, 코드 변경 적용
- 법개정 관련 응용SW 개선 및 지방세외수입 인프라(HW·상용SW) 증설
-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변환 등 지원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 지방세외수입정보화 발전협의회, 현장방문, 사용자 교육, 자치단체 요청 등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SW 반영
- 장애예방 및 대응, 시스템 연계, 자료이관 등 기술지원
- 지방세외수입 업무별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운영지원 등</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able>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개요	세외수입 감액관리	3,267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국토교통부	세외수입 감액관리
	세외수입 결손관리	2,565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건설공제조합, 대법원, PG사(VAN),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 관세청, 한국신용정보원	세외수입 결손관리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812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세외수입 수납관리	296,978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금융결제원	세외수입 수납관리
	세외수입 압류관리	7,220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건설공제조합, 대법원, PG사(VAN),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 관세청, 한국신용정보원	세외수입 압류관리
	세외수입 체납관리	3,869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외수입 부과관리	292,647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산정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세외수입 부과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임실군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8개 항목 제외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5개 항목 제외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자동차관리법』제74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법률이 규정하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수행해야 할 업무를 누락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위임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법규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1.1.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령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수행해야 할 업무를 누락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위임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법규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1.2.2) -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는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소홀해지고 의도하지 않은 법규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1.2.3)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에 비상연락망 등 긴급 연락체계가 누락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규위반 발생 및 유출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어 피해 확산 및 기관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1.3.2)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절차 및 안내가 미흡 경우 경우, 법규위반 발생 및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등 처리요구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어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1.4.1)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지 않으면 법규위반 발생 및 불필요한 민원 증가와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1.4.2)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이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법규위반 및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음(2.1.2)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공개 내용이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법규위반 발생 및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2.3.2) -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위탁되는 항목, 목적 등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처리 정지 등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3.4.1)
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내부 관리계획 개선 필요(1.1.2)(1.2.2)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보완 - 연간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계획 보완 권장(1.2.3) : 개인정보보호 활동 예산 포함 - 개인정보 유출사고 절차서 개선 필요 및 모의훈련 실시 권장(1.3.2) - 내부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 필요(1.4.1) : 권리보장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 개선 -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안내 필요(1.4.2) :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 -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및 시행 필요(2.1.2)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필요(2.3.2)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기재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 공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 사실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필요(3.4.1)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 확인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기재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 공개 확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사실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확인
평가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3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6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4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4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6개 항목을 제외하고 21개의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4개 평가분야 30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 • 추가적으로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